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. 18(금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도시재생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윤의식, 서기관 조민우 • ☎ (044) 201-4904
	도심재생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소성환, 사무관 박은숙 • ☎ (044) 201-493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도시재생 사업지의 부동산시장 불안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정밀 모니터링·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, 선정,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.

○ (신청 단계)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 (선정 단계) 정부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, 현장 조사하고,

- 사업지역의 주택·토지가격 변동률,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배제*,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.

*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하여 '17년 선정 시 1곳(세종시 금남면), '18년 선정 시 3곳(서울시 동대문구·종로구·금천구)을 제외한 바 있음

○ (선정 이후)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,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.

* 현재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

-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,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·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
 - 다만,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,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- 아울러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* 체결 등 상생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 - * 작년 말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('18.12.28):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시, 차임(또는 보증금)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(5%이하) 이하로 하고, 계약갱신 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(10년)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

-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,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 1.18(금)) >

◆ 도시재생사업의 그늘..외지인들 ‘먹잇감’으로 변질
 - 외지인들 집 8~10채씩 사들여 가난한 원주민들만 피해보는데 정부는 예산만 뿌리고 뒷집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조민우서기관(☎ 044-201-49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